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8가합57774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나20010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8가합577749 판결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담당변호사 이소희, 김진욱, 박현민, 손현정)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담당변호사 전태진, 이신호)

변론 종결 2021. 10. 7.

판결 선고 2021. 12. 2.

주 문

1.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1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29,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29,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45,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345,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이 사건 대여약정 및 이 사건 선행판결

1) 원고는 2002. 3. 18. C에게 9억 7,200만 원을 이자 연 11%, 변제기 2002. 8. 1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C가 이 사건 대여약정에 의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7. 8. 16.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0270호로 위 대여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C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07. 10. 30. 무변론으로 "C는 원고에게 9억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18.부터 2007. 8. 29.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2. 6.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7. 11. 14.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C에게 이 법원 2017가합578998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8. "C는 원고에게 9억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18.부터 2007. 8. 29.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및 원고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 1) C의 법률상 처인 피고는 2016. 2. 23. E, F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6억 6,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6. 3.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7,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6. 3. 10.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7,1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3) 한편 C는 2015. 8. 4.부터 2016. 8. 22.까지 별지 1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로 총 5억 2,911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 4)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C의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 1) C는 원고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차용증과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실제로 원고로부터 9억 7,2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으므로 차용증 등에 따른 이 사건 대여약정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한 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2) 그러나 이 법원은 2020. 9. 23.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8가합572607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보정기간 내에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8. 4. 4.자, 2019. 9. 17.자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2019. 7. 8.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2019. 10. 17.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2019. 10. 2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과 주식투자 비용을 증여한 것인바, C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C가 피고와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금액인 별지 1 표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금액'란 합계 529,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만일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C는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서 명의신탁자인 C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서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수자금 등 529,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3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와 C가 부부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가 주식투자자금으로 받은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원래부터 피고의 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중 주식투자자금으로 송금한 별지 1 표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3 기재 각 송금액의 합계액 3억 6,711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83,555,000원은 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식투자자금 증여금액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억 6,2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별지 1표 '제2, 3 예비적 청구금액'란 합계액인 345,555,000원에 한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제2 예비적 청구) 내지 채권자대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제3 예비적 청구)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살피건대, 원고가 2002. 3. 18. C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9억 7,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7. 8. 16.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0270호로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C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반환채권 내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2. 3. 18.경 그 소유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 124,000주의 실물 주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추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C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형식적으로 차용증,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권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원고가 C에게 실제로 9억 7,200만 원을 대여하거나 J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으므로 위 차용증,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법률행위는 비진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 제공된 J 발행 주식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원고와 채무자인 C 사이에서 9억 7,2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그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앞서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취득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의 대표인 피고가 위 회사 등에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은 원고가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대여약정이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주가조작을 위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C는 타 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증권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바, 가사 위 대여금이 주가조작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C가 위 범죄행위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C는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권 내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에 따른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C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1)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로부터 2016. 2. 23. 3,100만 원을, 2016. 3. 10. 1억 2,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는데 위 각 송금시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시점인 점, ② 피고는 현재 직업이 없고 종전에도 특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2016. 3. 10.경 법무사인 K 명의로 매도인 중 한 명인 E에게 475,782,350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초과하는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C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외에 별다른 자금원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중 별지 표 순번 1 내지 4, 10, 11, 13 기재 각 송금행위가 있는 후 송금액 중 대부분의 금원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된 점, ⑤ C는 2015. 12. 14. 3,000만 원을(같은 표 순번 5), 2016. 7. 1. 630만 원을(같은 표 순번 12) 각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즉시 이체하였고, 피고는 위 자금을 주식거래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C가 자신이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2015. 8. 4.부터 2016. 8. 22.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5억 2,911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익자의 선의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C의 대여금 채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었으므로 C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2007. 8. 16.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0270호로 위 대여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위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027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2007. 8. 29.경 소장 부분을 직접 송달받았으나 이를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위 사건의 피고인 C는 소장 부분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C의 처인 피고가 위 사건의 소장 부분을 직접 송달받았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는 C와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C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서 증여 범위 제한 여부 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피고에게 주식투자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송금받은 금액 중 절반은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와 C는 현재까지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와 C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 외에 C가 보유하였던 재산이 원래는 피고의 소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따라 취득한 이익은 5억 2,911만 원이다. 한편, 변론종결일인 2021. 11. 29.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그 원금만 보더라도 9억 7,200만 원에 달하므로, 결국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취소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하여야 할 가액배상은 피고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인 5억 2,911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따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9,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철민

판사오지애

판사김진하

별지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